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개정(안)

2019. 2.

한국도팡방지위원회

목 차

전문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도꿩의 정의 및 프로도팡방지규정 위반 2
제3조 도핑의 입증 4
제4조 금지목록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5
제5조 검사 및 조사 9
제6조 시료분석10
제7조 결과관리
제8조 공정한 청문에 대한 권리15
제9조 출전정지기간의 부과
제10조 출전정지기간 부과 외 결과조치 23
제11조 구단에 대한 후속 조치 23
제12조 항소 24
제13조 기밀과 보고 26
제14조 <삭제> 28
제15조 프로단체 및 소속구단의 의무 28
제16조 소멸시효 29
제17조 교육 29
제18조 프로도핑방지규정의 개정 및 해석 29
제19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30
부록 : 용어의 정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전문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프로스포츠단체의 등록선수 또는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핑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또는 선수의 건강에 중대한 잠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막고 공정한 경기를 보장하기 위한 도핑검사 대상자 선정 및 방법, 치료목적사용면책, 시료채취 및 관리, 시험실 분석, 결과관리 및 청문 등 도핑관리에 관한 단계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이하 "프로도핑방지규정" 또는 "이 규정"이라 한다.)이라 하고,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규약과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1조 적용범위

프로도핑방지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이하 "프로단체"라 한다.)와 등록선수 또는 가입회원(이하 "선수"라 한다.), 선수지원요원, 기타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1.1 프로단체에 대한 적용

- 1.1.1 프로단체는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수용 및 준수를 프로단체의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프로 단체와 소속선수, 선수지원요원, 기타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프로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 1.1.1.1 프로단체는 선수의 등록, 계약 또는 입회 시에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수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1.2 프로단체는 제1.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에 대해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집행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적극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제8조 및 12조에서 규정한 청문위원회 및 항소위원회의 제재권한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인정하고, 해당 결정이 집행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개인에 대한 적용

프로도핑방지규정은 국적 또는 한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개인(미성년자 포함)에게 적용되다.

- 1.2.1 프로단체의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
- 1.2.2 개최장소를 불문하고 프로단체에서 주최, 주관,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경기대회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

1.3 〈삭제〉

제2조 도핑의 정의 및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도핑이란 이 규정 제2.1항 내지 제2.10항에서 규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발생을 말한다. 제2조의 목적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하는 상황 및 행위를 기술하는 데에 있다. 도핑 사건의 청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진행된다.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2.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시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2.1.1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2.1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 2.1.2 제2.1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입증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 ① A-시료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고, 선수가 B-시료 분석을 포기하여 B-시료가 분석되지 않는 경우
 - ② 선수의 B-시료가 분석되고, 선수의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에서 발견된 금지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
 - ③ 선수의 B-시료를 두 개의 병에 분리하여 첫 번째 병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가 두 번째 병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경우
- 2.1.3 금지목록에서 허용농도가 명시된 약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의 시료에서 소량이라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되면 이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2.1.4 제2.1항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또는 금지목록에서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약물의 평가에 대한 별도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2.2 선수에 의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 2.2.1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신체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제2.2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 2.2.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는 제2.2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2.3 시료채취 회피, 거부 또는 시료제공 불응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에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를 거부, 또는 시료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2.4 소재지정보 불이행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의한 바대로,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에 의한 12개월 내 세 번의 검사불이행 또는 제출불이행의 합산

2.5 도핑관리 과정의 특정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시도

금지방법의 정의에 달리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도핑관리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부정행위에는 도핑관리요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도핑방지위원회에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잠재적 증인을 위협하거나 위협을 주려고 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6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 2.6.1 선수가 경기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가 경기기간 외에 경기기간 외 기간에 금지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단,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가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의한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6.2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지원 요원이 경기기간 외에 선수, 경기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단,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가 승인된 치료목적사용 면책에 의한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지원요원이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7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2.8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경기기간 외에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기간에 금지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2.9 공모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위반 시도 또는 기타 관계자에 의한 제9.10.1항 위반과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음모, 은폐 또는 기타 형태의 공모

2.10 금지된 연루

도핑방지위원회 관할 하에 있는 프로단체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출전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로 형사 기타 다른 제재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기타 결정을 받은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행위.

제3조 도핑의 입증

3.1 입증책임 및 기준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입증기준은 제기된 주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청문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증명하였는가의 여부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입증기준은 단순한 개연성보다 높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수준보다는 낮다.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추정의 반증이나 특정사실 또는 특정 상황의 확정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입증의 기준은 개연성 평균에 의한다.

3.2 사실 및 추정사항의 입증 방법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자인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 한다. 도핑사건에 적용되는 입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3.2.1 관련 과학계 내부 논의 후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에 의해 승인된 분석방법 및 결정은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3.2.2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그리고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기타 시험실은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분석 및 관리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되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입증하여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 분석결과의 원인이 되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 이탈을 제시하며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3.2.3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기타 국제표준, 그 밖의 프로도핑방지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은 그 증거나 검사결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그 밖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타 관련 국제표준 또는 그 밖의 프로도핑방지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을 입증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그러한 이탈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3.2.4 계류 중인 항소에 기속되지 않는 관할 법정 결정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결정이 자연법적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결정을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된다.
- 3.2.5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청문하는 청문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문회에 (관계자가 직접 또는 청문회의 진행절차상 유선상으로) 출석하여 청문위원 또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토록 안내하였으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불리한 추단을 할 수 있다.

제4조 금지목록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4.1 금지목록 발간 및 개정

프로도핑방지규정에서의 금지목록은 규약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공포하고 개정하는 최신 금지목록에 의한다. 또한, 「금지목록 국제표준」중 특정 종목 금지약물과 관련하여,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이 금지하고 있는 약물은 프로도핑방지규정에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세계도핑방지기구 금지목록 또는 개정 금지목록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추가 조치를 요하지 않고,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금지목록을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금지목록과 그 개정안이 프로도핑방지규정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금지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및 금지목록 상의 약물 구분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약물과 방법이 은폐제가 아니거나, 경기력 향상의 잠재력이 없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스포츠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2 특정약물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S1, S2, S4.4, S4.5, S6.a로 분류되는 약물을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Specified Substances)이 된다. 특정약물 범주에 금지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4.3 치료목적사용면책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영문으로 Therapeutic Use Exemptions(TUE)이다.

선수의 시료 내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사용 시도, 소지, 투여, 투여 시도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합치된다면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프로도핑방지규정에서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기준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의한다.

4.4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 4.4.1 선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치료목적사용 면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성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 참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여 경기 참가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 또는 응급의료조치 등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4.4.2 도핑방지위원회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4.5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5.1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4.5.2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한 선수 또는 특정구단과 관련이 있는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위원은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 심사 및 승인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4.5.3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심사·승인하여야 하며,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알게 된 선수의 개인의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5.4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이와 같은 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된다.
- 4.5.5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 또는 불승인 되는 경우, 신속하게 선수 또는 소속구단에 통보한다.
- 4.5.6 〈삭제〉

4.6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 4.6.1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다음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① 선수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다.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특정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③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다.
 - ④ 선수의 치료사유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없이 사용된 예전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
- 4.6.2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국제수준의 대회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수준의 선수이거나 국제대회에 참가 예정인 선수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4.6.2.1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대해 이미 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제7조에 따라 자신이 속한 국제경기 연맹에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인정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만약 국제경기 연맹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의 거부를 고려한다면, 국제경기연맹은 즉시 국제수준의 선수 및 도핑 방지위원회에 그와 같은 내용을 사유와 함께 통지한다. 국제수준의 선수 및 도핑 방지위원회가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지를 받고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문제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회부되었다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국내수준의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국제수준의 경기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만약 상호 인정 거부 건이 검토를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회부되지 않으면, 치료목적사용면책은 21일의 검토 최종기한이 만료와 동시에 무효가 된다.
 - 4.6.2.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없는 경우,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국제경기연맹에 직접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경우,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세계도핑방지 기구의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국제수준의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는 유효하다.(그러나 국내수준의 경기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도핑방지위원회가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해당 문제를 회부하지 않는 경우,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21일의 검토 최종기한이 만료되면, 국내 경기에서도 역시

유효하게 된다.

- 4.6.3 적절하게 제출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신청 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의 검토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신청의 거부로 간주된다.
- 4.6.4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만료. 취소. 철회 또는 번복
 - 4.6.4.1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① 승인된 기간 종료 시에 추가공지 또는 기타 형식상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②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시에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가 부과한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③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추후에 발견되면, 해당 승인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④ 국제대회 출전 선수의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검토 또는 항소에 의해 번복 될 수 있다.

4.7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의 항소

- 4.7.1도핑방지위원회 항소위원회 항소
 - 4.7.1.1 도핑방지위원회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경우 또는 제4.6.3항에 의한 신청의 거부가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항소위원회(이하 "항소위원회"라 한다.)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4.7.1.2 치료목적사용면책 관련 항소가 제기될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의학전문가가 판단 하여야 하며, 항소위원회 위원장은 치료목적사용면책 항소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학전문가를 임시로 항소위원회의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항소위원회는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의료정보를 선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7.1.3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결정을 항소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항소위원회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결정은 유효하다.
 - 4.7.1.4 항소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그 검토에 따라 결정이 번복되지 않은 치료목적사용 면책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의제기 또는 항소제기를 할 수 없다.

4.7.2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 4.7.2.1 제4.6.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 4.7.2.2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국제경기연맹(국제경기연맹을 대신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신청을 검토하기로 동의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 사용면책 결정,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그 검토에 따라 번복되지 않은 국제경기연맹(국제경기연맹을 대신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신청을 검토하기로 동의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 4.7.2.3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번복결정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제경기연맹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및 조사

5.1 검사 및 조사의 목적

- 5.1.1 검사 및 조사는 오직 도핑방지의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 5.1.2 검사는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존재 및 사용금지에 대한 엄격한 규약의 준수 또는 비준수에 대한 분석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배분계획, 검사, 검사 후 활동 및 모든 관련 활동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1.3 다음의 경우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5.1.3.1 제7.4항 및 제7.5항에 따라 비정형분석결과, 비정형수첩결과, 비정상수첩결과와 관련하여 제2.1항 또는 제2.2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 및 정보 수집(특히 분석적 증거 포함)
 - 5.1.3.2 제2.2항~2.10항의 조항 중에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 및 정보 수집(특히 비분석적 증거 포함)
- 5.1.4 도핑방지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배분계획의 수립, 표적검사계획의 수립,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기준의 형성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 도핑방지 정보를 획득·평가하고 처리할 수 있다.

5.2 검사 권한 및 책임

- 5.2.1 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하는 경기기간 중 검사 및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5.2.2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종목의 특성, 검사 유형, 시료채취 유형 그리고 시료분석 유형 간에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한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배분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5.2.3 프로도핑방지규정에 의한 시료채취절차는 검사시행 당시 유효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의한다.

5.3 선수소재지정보

5.3.1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소재지정보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프로단체 선수에 대한 검사대상자등록명부를 작성하여 선정된 선수에게 소재지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는 선수의 기준을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경우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를 변경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또한 프로단체 소속구단에 대하여 구단의 단체 활동 세부사항(훈련일정, 숙박 장소 등)이 포함된 소재지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단은 소재지정보제출 요구사항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단체 선수라도 도핑 방지위원회가 실시하는 경기기간 외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3.2 선수가 12개월 내 세 번 이상 신고한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마감기한까지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항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으로 간주하다.
- 5.3.3 선수와 관련된 소재지정보는 항상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도핑관리의 계획, 조정 또는 수행, 선수생체수첩 또는 기타 분석결과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잠재적 프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거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라 그러한 목적과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 5.3.4 축구선수와 관련된 소재지정보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해당 선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타 도핑방지기구에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이하 "ADAMS"라 한다.)을 통하여 공유될 수 있다.

5.4 복귀 검사

- 5.4.1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출전정지 중인 선수는 경기복귀 전에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소재지정보 요건을 준수할 의무 등 관련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고, 복귀 전 실시하는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 5.4.2 출전정지기간 중에 은퇴하거나 임의 탈퇴 되는 선수에 대해서 프로단체는 해당 선수의 은퇴 또는 임의 탈퇴 시점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만약 그 선수가 다시 경기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선수는 관련 프로단체의 규정에 의거 선수 등록을 하고 은퇴한 날짜에 남아있는 출전정지기간을 이행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은퇴 또는 임의 탈퇴로 인해 정지된 출전정지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선수가 선수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산정된다. 선수가 프로단체에 경기 복귀의사를 밝히면, 프로단체는 선수등록시점을 명시하여 등록 후 3 근무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통지하고, 해당 선수는 출전정지기간 이행 중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하는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시료분석

6.1 인증 및 승인된 시험실의 사용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관리 시료를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달리 승인한 시험실에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시료분석을 의뢰할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승인 시험실에 대한 선택은 도핑방지위원회가 결정한다.

6.2 시료채취 및 분석의 목적

시료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명시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검출과 규약 제4.5항(감시프로 그램)에 명시된 세계도평방지기구가 감시하는 그 밖의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된다. 또한 도핑방지를 목적으로 선수의 소변, 혈액 또는 기타 생체기질에서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측모 등 관련 지표를 축적하는 도핑방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도핑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분석된다. 시료는 추후 분석을 위하여 채취되고 보관될 수 있다.

6.3 시료연구

어떠한 시료도 선수의 서면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6.2항 목적 이외의 사유로 사용되는 시료는 특정 선수를 역추적 할 수 없도록 인적사항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 시료분석 및 보고기준

시험실은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5 시료의 재분석

모든 시료는 A-시료 및 B-시료의 분석결과(또는 B-시료의 분석을 포기하거나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A-시료 결과)가 선수에게 통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제2.1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근거로 하여 추가로 분석될 수 있다.

제7조 결과관리

7.1 결과관리 수행의 책임

도핑방지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결과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7.2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조사

도핑방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선수의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7.2.1 분석결과는 시험실의 책임 있는 대표가 서명한 암호화된 형식의 보고서 또는 ADAMS를 통해 도핑방지위원회에 전달되며, 모든 교신은 기밀로 수행된다.
- 7.2.2 시험실로부터 비정상분석결과가 접수되면, 도핑방지위원회는 ①「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 표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것인지 ② 비정상 분석결과를 초래한「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다.
- 7.2.3 만약 제7.2.2항의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조사결과 유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있거나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전체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해당 내용은 선수 및 프로단체에 통지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7.3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조사 후 통지

7.3.1 만약 제7.2.2항의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조사에서 유효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치료

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해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3.1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즉시 선수 및 프로단체에 다음의 내용을 통지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 ① 비정상분석결과
- ② 위반한 프로도핑방지규정
- ③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와 특정기간 내에 그러한 요청이 없으면 B-시료 분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 ④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경우, B-시료 분석을 위한 예정 날짜, 시간 및 장소
- ⑤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른 B-시료 개봉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 및 선수 대리인의 기회
- ⑥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A-시료 및 B-시료의 시험실 문서 일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비정상분석결과를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사실 또한 선수 및 프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 7.3.2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시험실은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B-시료 분석을 위한 일정을 잡는다. 선수는 B-시료 분석요구를 포기함으로써 A-시료 분석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방지위원회는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7.3.3 선수, 선수 대리인 그리고 도핑방지위원회는 B-시료 분석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 7.3.4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제2.2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체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및 프로단체에 시료가 음성으로 판정되어 더 이상의 후속조치가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 7.3.5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결과를 선수 및 프로단체에 통지하고 비정상분석결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7.4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추가조사

- 7.4.1 시험실은 「시험실 국제표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일부 상황에서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약물의 존재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비정형분석결과로 보고 한다.
- 7.4.2 비정형분석결과가 접수되면, 도핑방지위원회는 ①「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것인지, ②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 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7.4.3 제7.4.2항의 비정형분석결과의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형분석 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전체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해당 내용은 선수 및 프로단체에 통지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평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 7.4.4 만약 조사결과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으면, 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조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 선수 및 프로단체는 비정형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로 처리될 것인지 여부를 통지받게 되며, 이러한 통지는 제7.3.1항에 따른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 7.4.5 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비정상분석결과로 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비정형 분석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 7.4.5.1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조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B-시료의 분석을 결정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비정형분석결과의 개요와 제7.3.1항 ④~⑥에 기술된 정보에 대한 통지를 한 이후 B-시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 7.4.5.2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① 주요 국제대회 주관단체가 개최하는 국제대회 직전에 주요 국제대회 주관단체로부터 또는 ② 임박한 국제대회 팀원의 선정 마감일을 맞추어야할 책임이 있는 체육단체로부터 주요 국제대회 주관단체 또는 체육단체가 제공한 명단에서 확인된 선수가 보류 중인 비정형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해 먼저 선수에게 통지한 후 그 선수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7.5 비정형수첩결과 및 비정상수첩결과의 조사

비정형수첩결과 및 비정상수첩결과에 대한 조사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시험실 국제표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했을 경우 즉시 선수 및 프로단체에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와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7.6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대로, 도평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 1'에 따라 도평방지위원회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선수에 대한 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과 관련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도평방지위원회는 선수가 제2.4항의 프로도평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선수 및 프로단체에 제2.4항 위반 혐의와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평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7.7 제7.2항~제7.6항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도핑방지위원회는 제7.2항~제7.6항이 적용되지 않는 잠재적인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서도 필요한 모든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그리고 프로단체에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와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7.8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사전 확인

위에서 규정한 대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통지하기 전에 도핑방지위원회는 사전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7.9 임시출전정지

- 7.9.1 의무적 임시출전정지의 부과: 도핑방지위원회는 A-시료의 분석 결과 특정약물 이외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비정상분석결과가 접수되고, 제7.2.2항에 의한 조사결과 유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있거나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7.2항, 제7.3항 또는 제7.5항에 따른 통지 시 또는 통지 직후에 임시출전정지가 부과되어야 한다.
- 7.9.2 선택적 임시출전정지: 특정약물, 오염된 제품의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제7.9.1항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제7.2항~제7.7항에 따른 조사 및 통지를 거친 후, 제8조에 규정된 최종 청문 이전에 임시출전정지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7.9.3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제7.9.1항 또는 제7.9.2항에 의거하여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임시출전정지 부과 이전 또는 이후 ① 적절한 시기에 임시청문의 기회를주거나 ② 제8조에 따른 신속한 최종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는 임시출전정지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선수가 청문위원들에게 자신의 위반이 오염된 제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면,임시출전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오염된 제품에 관한 선수의 주장에 대해 의무적 임시출전정지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청문위원회의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7.9.4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임시출전정지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후속의 B-시료 분석이 A-시료 분석결과를 확인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임시출전정지처분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선수가 제2.1항 위반으로 경기에서 제외되었으나 후속 B-시료 분석이 A-시료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선수는 후속 경기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 7.9.5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관련 통지를 받았으나 임시출전정지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후속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출전정지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7.10 청문 없는 결정

7.10.1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청문을 포기하며,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명시된 의무적 결과조치 또는 도핑방지

위원회가 제시(프로도핑방지규정 하에서 결과조치에 대해 일부 재량이 존재)하는 결과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

- 7.10.2 만약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가 보낸 통지서에 적힌 구체적인 기간 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위반을 자인하고 청문을 포기하며,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의무적 결과조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프로도핑방지규정 하에서 결과조치에 대해 일부 재량이 존재)하는 결과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7.10.3 제7.10.1항 또는 제7.10.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청문은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도핑방지 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 항목, 그 결과로 부과된 결과조치 및 사유가 기술된 서면결정문을 즉시 발행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2.2항에 따라 항소권이 있는 자에게 위 결정문의 사본을 보내고, 제13.2항에 의거 그 결정을 일반에 공개한다.

7.11 결과관리 결정의 통지

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제12.2항의 항소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
- ②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철회한 경우
- ③ 임시출정정지를 부과한 경우
- ④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청문 없이 결과조치 부과에 합의한 경우

7.12 종목에서의 은퇴 또는 임의 탈퇴

- 7.12.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가 결과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기간에 은퇴하거나 임의 탈퇴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과관리 절차를 완료할 권한을 가진다.
- 7.12.2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결과관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은퇴하거나 임의 탈퇴 처리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할 당시에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결과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7.12.3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가 은퇴 또는 임의 탈퇴처리 되는 경우, 프로도핑방지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의 이행이 완료된 후 경기 복귀가 가능하다.

제8조 공정한 청문에 대한 권리

8.1 청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1.1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5년 이상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독립적인 청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청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청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8.1.2 도핑방지위원회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10.1항 또는 제7.10.2항에 따른 청문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청문 및 결정을 위해 청문위원회로 이송된다. 이러한 이송에 따라 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청문 및 결정을 위해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음)을 임명한다. 임명된 위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각 위원은 임명 시에 청문 당사자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위원장에게 밝혀야 한다. 청문 위원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어야한다.
- 8.1.3 청문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청문과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소집되며, 그 운영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8.2 공정한 청문을 위한 원칙

청문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예정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경기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청문은 청문위원회에 의해 허용된 신속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프로단체, 선수의 소속 구단은 청문회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청문은 항상 모든 당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

8.3 청문위원회의 결정

- 8.3.1 청문위원회는 청문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날짜와 서명이 포함된 결정문을 서면의 형태로 발행하여야 한다. 결정문에는 결정내용 및 부과된 출전정지기간에 대한 이유가 포함되며,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이 있는 경우, 규정상의 최대 제재가 부여되지 않은 합리적 이유도 포함된다.
- 8.3.2 청문 결정문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프로단체 및 제12.2항의 항소권자에게 제공된다.
- 8.3.3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결정은 제13.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아닌 무혐의 결정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될 수 있고,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일반 공개에 동의하면, 결정은 결정 내용이 모두 포함된 형태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승인한 수정된 형태로 공개된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규정 제13.2.5항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12조 항소 규정에 의거 청문위원회의 결정은 항소될 수 있다.
- 8.3.4 제12조 항소 규정에 의거 항소되지 않은 경우 청문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른 법원이나 재판소에 청구, 중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조 출전정지기간의 부과

9.1 경기출전정지기간의 정의

경기출전정지기간(이하 "출전정지기간"이라 한다.)이란 출전정지 제재가 부과된 날로부터 제재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 프로도핑방지규정에 의거하여 경기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재는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를 기준으로 한다.

9.2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소지에 대한 출전정지 처분

- 9.2.1 종목별 출전정지기간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축구: 4년
 - ②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 ③ 골프: 1년
 - 9.2.1.1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없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해당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9.2.1.2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있고,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프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9.2.2 제9.2.1항이 적용되지 않는 위반의 경우 종목별 출전정지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축구: 2년
 - ②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에 해당하는 기간
 - ③ 골프: 6개월
- 9.2.3 "고의"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이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또는 자신의 행동이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결과로 이어질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도 그 위험성을 명백히 무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의 비정상분석결과로 인한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은 해당 약물이 특정약물이고, 선수가 금지약물이 경기기간 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의 비정상분석결과로 인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약물이 특정약물이 아니고 선수가 그 금지약물이 경기력 향상과 관련 없이 경기기간 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간주된다.
- 9.2.4 야구, 농구, 배구 종목에서 출전정지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출전정지기간의 기산일로부터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마지막 경기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제재 기산일이 정규시즌 시작 전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출전정지기간이 산정되며, 해당 정규시즌 종료 시까지 부과된 제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시즌 시작 전까지 전체 기간은 출전정지기간에 포함된다.

9.3 기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출전정지 처분

9.3.1 시료채취에 불응한 경우, 선수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제9.2.3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제9.2.2항의 제재 기준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9.2.1항의 제재 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 9.3.2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제9.2.2항을 준용하되,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경될수 있다. 단,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감경될수 없다. 이러한 감경은 마지막순간에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선수나 구단이 조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심각한 의심을일으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9.3.3 제2.5항의 도핑관리 과정의 특정 부분에 있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제9.2.1항을 준용한다.
- 9.3.4 제2.7항 또는 제2.8항의 위반에 대한 출전정지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제9.2.1항에 적시된 기준부터 최대 영구출전정지이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제2.7항 또는 제2.8항의 위반은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고, 만약 특정약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위반이 선수지원요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제재는 영구출전정지가 된다. 아울러, 체육 관련법 이외의 법규에도 위반될 수 있는 제2.7항 또는 제2.8항의 심각한 위반은 관할 소관 행정부처, 전문기관 또는 사법당국에도 보고된다.
- 9.3.5 제2.9항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출전정지기간은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① 축구: 2년 이상 4년 이하
 - ②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 이상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
 - ③ 골프: 6개월 이상 1년 이하
- 9.3.6 제2.10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9.2.2항을 준용하되,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단,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감경될 수 없다.
- 9.3.7 〈삭제〉

9.4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출전정지의 면제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건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출전정지는 면제된다. 제2.1항 위반과 관련하여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출전정지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검출된 금지약물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본 조항이 적용되어 출전정지가 면제된 경우, 해당 규정 위반은 제9.7항의 재위반에 대한 출전정지기간 산정시에 위반 횟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근거한 출전정지기간의 감경

9.5.1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6항의 위반에서 특정약물 또는 오염된 제품과 관련한 제재의 감경 9.5.1.1 특정약물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있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재 부과 기준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① 축구: 최소 견책(출전정지 없음)에서 최대 2년 출전정지
- ② 야구/농구/배구: 최소 견책(출전정지 없음)에서 최대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25%에 해당하는 기간 출전정지

③ 골프: 최소 견책(출전정지 없음)에서 최대 6개월 출전정지

9.5.1.2 오염된 제품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검출된 금지약물이 오염된 제품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제재 기준은 위 제9.5.1.1항을 준용한다.

9.5.2 제9.5.1항이 적용되는 않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의 적용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9.5.1항이 적용되지 않는 개별 사건에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9.6항의 추가감경 또는 면제 조항에 의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나, 제재의 감경은 본래 적용되는 출전정지기간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래 적용되는 출전정지가 영구출전정지라면, 이 조항에 따라 감경된 출전정지기간은 각 종목별로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① 축구: 8년 이상
- ②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경기수의 20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 ③ 골프: 2년 이상

제2.1항 위반과 관련하여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출전정지기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검출된 금지약물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9.6 과실 이외의 사유에 근거한 출전정지기간의 면제, 감경 또는 기타 결과조치

9.6.1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발견 또는 입증에 대한 실질적 도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의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최종 항소결정 또는 항소제기기간 만료 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 사법 당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개별 사건에 부과된 출전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란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다른 관계자에 의해서 행해진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적발 또는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② 형사당국 또는 징계단체가 다른 사람의 형사범죄 또는 전문규정의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가 결과관리 책임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다.

9.6.2 다른 증거가 없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자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시료채취의 통지를 받기 전에(또는 제2.1항 이외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위반의 최초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행위를 자인하고 그 자인이 자인 당시에 신빙성 있는 유일한 위반의 증거가 되는 경우, 출전정지기간은 감경될 수 있으나 본래 적용되는 출전정지기간의 1/2 이하로는 될 수 없다.

9.6.3 제9.2.1항 또는 제9.3.1항의 제재를 받을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혐의에 직면한 후 프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신속한 자인

제9.2.1항 또는 제9.3.1항 위반으로 잠정적으로 제9.2.1항 기준의 제재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혐의에 직면한 후 이를 즉각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과관리의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 및 재량에 따라

위반의 심각성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제9.2.2항 기준까지 출전 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9.6.4 하나 이상의 감경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대한 출전정지기간의 감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9.4항, 제9.5항 또는 제9.6항 중 두 개 이상의 조항에서 제재의 감경 조건을 입증하는 경우, 제9.6항의 감경을 적용하기 전에 제9.2항, 제9.3항, 제9.4항 및 제9.5항에 따라 출전정지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9.6항에 의거해 출전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출전정지기간은 감경될 수 있으나 본래 적용되는 출전정지기간의 1/4이하로는 될 수 없다.

9.7 재위반

- 9.7.1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 출전정지기간 부과기준은 다음 각 항목 중 가장 긴기가 이상이어야 한다.
 - ① 각 종목별로.
 - 축구: 6개월
 -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6.25%에 해당하는 기간
 - 골프: 45일
 - ②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출전정지기간의 1/2(제9.6항의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③ 두 번째 위반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가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에 적용되었을 출전정지기간의 2배(제9.6항의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단, 위에서 결정된 출전정지기간은 제9.6항의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경될 수 있다.
- 9.7.2 세 번째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영구출전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단, 세 번째 위반이 제9.4항 또는 제9.5항의 출전정지의 면제 또는 감경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2.4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바, 이 경우 출전정지기간의 부과 기준은 각 종목별로 다음과 같다.
 - ① 축구: 8년부터 영구출전정지
 - ②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영구출전 정지
 - ③ 골프: 1년부터 영구출전정지
- 9.7.3 재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정
 - 9.7.3.1 제9.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첫 번째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후 또는 도핑방지 위원회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두 번째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것으로 도핑방지위원회가 입증한 경우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만 두 번째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위반은 통합하여 첫 번째 단일 위반이 되며, 제재는 더 무거운 제재가 수반되는 위반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 9.7.3.2 첫 번째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과 이후에 도핑방지위원회가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두 개의 위반을 동시에 판단했을 경우 부과될 수 있었을 제재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경기 결과는 먼저 발생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시점으로 소급하여 제10조에 따라 실효된다.

9.7.4 10년의 기간 내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재위반

제9.7항 규정의 목적상 각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재위반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9.8 〈삭제〉

9.9 비용청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재량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 출전정지기간에 관계없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된 비용의 회수는 이 규정에 따라 본래 적용될 수 있는 제재의 감경을 위한 근거로 고려될 수 없다.

9.10 출전정지기간의 기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전정지기간은 출전정지를 부과하는 청문결정일 또는 청문이 포기된 경우에는 출전정지를 수용한 날 또는 달리 출전정지가 부과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임시출전 정지기간은 그것이 부과된 것이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든 불문하고 부과된 전체 출전정지기간에서 그 기간만큼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9.10.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기인하지 않은 지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청문절차 또는 도핑관리의 기타 측면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채취일 또는 기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일자까지 앞당겨 출전정지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9.10.2 적시 자인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 받은 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을 신속(모든 경기대회에 있어서 선수가 다시 경기에 참여하기 전을 의미함)하게 자인하는 경우, 출전정지기간은 시료채취일 또는 최종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일자까지 앞당겨 기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각 개별 사건에 있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재의 부과를 수용한 날,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청문결정이 있은 날, 또는 제재가 달리 부과된 날로부터 최소한 출전정지기간의 1/2은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제9.6.3항에 의거 출전정지기간이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9.10.3 임시출전정지 또는 출전정지기간 이행의 인정
 - 9.10.3.1 임시출전정지가 부과되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준수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이러한 임시출전정지기간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출전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 출전정지 제재가 추후의 항소 결정에 따라 이행된다면, 선수는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출전정지기간 내에서 그러한 출전정지기간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 9.10.3.2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결과관리 권한을 가진 도평방지위원회에 임시출전정지를 서면으로 수용하고 그 때부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이러한 자발적인 임시출전정지기간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출전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임시출정정지를 수용한 문서 사본은 제13.1항에 따라 잠재적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각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 9.10.3.3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거나 소속구단에 의해 자체적으로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과된 임시출전정지 또는 자발적인 임시출전정지 발효일 이전의 기간은 출전정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11 출전정지기간 중 선수의 신분

9.11.1 출전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9.11.2 출전정지기간 중 참가금지의 위반

출전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9.10.1항의 출전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참가의 결과는 제10조에 따라 결과조치 되며, 원래의 출전 정지기간과 동일한 새로운 출전정지기간이 원래의 출전정지기간 뒤에 추가된다. 새로운 출전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 및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조정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참가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출전정지기간 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출전정지기간을 부과하는 결과관리를 진행하는 도핑방지위원회가한다. 이 결정은 제12조의 항소대상이 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출전정지기간 동안 참가금지를 위반한 선수를 도운 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 내에 있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서 제2.9항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9.11.3 〈삭제〉

9.12 제재의 자동 공개

제13.2항 규정에 따라 각 제재의 의무적 사항은 자동 공개된다.

9.13 선수의 신분에 따른 제재기준

9.13.1 프로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우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대회 주관 단체로부터 받은 제재기준에 비례하여 국내에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출전정지가 부과된다.(예: 4년 자격정지 ->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출전정지기간(야구/ 농구/배구) 또는 1년(골프)) 또한, 해당 선수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대회 주관단체 로부터 받은 제재기간 동안 어떠한 국제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 9.13.2 프로선수에서 전문체육으로 선수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 프로도핑방지규정에 의거 부과 받은 제재기간에 비례해서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재기준을 적용 한다.(예: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출전정지기간(야구/농구/배구) 또는 1년 (골프) -> 4년 자격정지)
- 9.13.3 전문체육 선수가 프로선수로 신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체육 선수로 받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재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예: 4년 자격정지 그대로 적용)
- 9.13.4. 프로와 전문체육 간 신분 전환 후 재전환 하고자 하는 선수의 경우, 선수가 제재 부과 당시 받았던 미이행된 제재기간을 이행하여야 한다.
- 9.13.5 프로선수와 전문체육 선수가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대회 주관기구를 불문하고, 도핑방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프로 선수에게는 프로도핑방지규정이, 전문체육 선수에게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이 적용된다.

제10조 출전정지기간 부과 외 결과조치

10.1 개인종목에 대한 결과조치

개인종목의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을 포함하여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개인경기결과가 자동 실효된다. 또한, 검사시기를 불문하고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시료가 채취된 날 또는 기타 프로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선수가 획득한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 모든 개인경기결과는 실효되고, 이는 임시출전정지 또는 출전정지기간 동안 획득한 것을 포함한다.

10.2 단체종목에 대한 결과조치

시즌 중 또는 시즌과 관련하여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이 발생한 경기의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프로단체는 해당 시즌에서 위반 선수가 획득한 모든 또는 일부의 개인경기결과를 실효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 해당 시즌 개인 시상 및 후보자 선정 제외 등 위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단에 대한 후속조치

11.1 다음의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구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1.1 한 구단에서 한 시즌 중에 두 명 이상의 선수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구단에 대한 적절한 표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1.1.2 구단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소속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도핑 방지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게을리 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구단에 대한 추가 표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1.2 프로단체는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구단에 대하여 프로단체의 관련 규정에 의거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1.2.1 〈삭제〉
 - 11.2.2 〈삭제〉

제12조 항소

12.1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

- 12.1.1 프로도핑방지규정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권자가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대상의 되는 기존 결정은 항소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항소위원회가 달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을 유지한다.
- 12.1.2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결정
 - ②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결과조치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은 결정
 - ③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
 - ④ 시효 등 절차상의 이유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
 - ⑤ 도핑방지위원회가 특정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
 - ⑥ 제7.7항에 따른 조사 후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
 - ⑦ 임시청문회의 결과로 임시출전정지를 부과하는 결정
 - ⑧ 도핑방지위원회의 제7.9항 위반
 - ⑨ 제9.10.2항 출전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위반에 대한 결정
- 12.1.3 치료목적사용면책 관련 항소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제4.7항에서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 12.2 〈삭제〉
- 12.3 〈삭제〉

12.4 항소권자

12.4.1 〈삭제〉

- 12.4.2 〈삭제〉
- 12.4.3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① 항소할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 ②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편
 - ③ 도핑방지위원회
-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출전정지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임시출전정지를 부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한한다.

12.5 항소제기기간

- 12.5.1 〈삭제〉
- 12.5.2 항소권자는 청문위원회의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2.6 항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2.6.1 도핑방지위원회는 5년 이상 경력의 의료전문가, 법률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항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항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항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항소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12.6.2 선정된 항소위원은 제기된 항소 사건과 어떠한 사전 관련도 없어야 한다. 특히, 현재 사건과 관련된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된 결정에 관여한 인사는 동일한 항소 사건의 심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각 위원은 항소를 위한 청문 위원으로 임명 시 당사자와 관련해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6.3 항소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건의 심리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위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소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12.6.4 도핑방지위원회는 항소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12.6.5 도핑방지위원회는 당사자로서 항소위원회의 절차에 참여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 12.6.6 선수의 소속구단 관계자는 항소위원회의 절차에 입회인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2.7 항소위원회의 절차

- 12.7.1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라 항소위원회는 자체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12.7.2 항소인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피항소인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다.
- 12.7.3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통보를 받은 후 항소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소명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권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 12.7.4 각 당사자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항소를 위한 청문회에서 자신을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
- 12.7.5 항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통역사 대동을 요청할 수 있다.
- 12.7.6 항소위원회의 청문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증인을 참석시키고 심문할 권리를 포함하여 증거를 제시(유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증언의 수용여부는 항소위원회의 재량에 의함) 할 권리를 가진다.
- 12.7.7 항소위원회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로 인하여 항소위원회의 진행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지시불응은 항소위원회의 결정 시 참작된다.
- 12.7.8 항소위원회의 절차는 예외적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위원회의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종료되어야 한다.

12.8 항소위원회의 결정

- 12.8.1 항소위원회의 청문절차 종료 후 또는 청문절차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항소위원회는 결정에 대한 이유, 날짜 및 서명이 포함된 과반수에 의한 결정문을 발행한다. 결정문에는 가능한 경우 프로도핑방지규정상 최대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도 포함한다.
- 12.8.2 도핑방지위원회는 항소권자 및 프로단체에 항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 12.8.3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른 법원이나 재판소에 청구, 중재, 소송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12.9 항소위원회의 권한 및 기본 원칙

- 12.9.1 항소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항소되는 사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을 청문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12.9.2 항소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독립적이며 공평하여야 한다.
- 12.9.3 항소위원회의 검토범위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며 청문위원회에서 검토 한 내용이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 12.9.4 항소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소위원회는 청문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 12.9.5 항소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적기의 청문
 - ②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인 항소를 위한 항소위원 임명
 - ③ 관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④ 적기에 서면으로 된 이유 있는 결정

제13조 기밀과 보고

13.1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및 기타 잠재적인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정보

13.1.1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통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는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통지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는 이러한 통지를 해당 종목 프로단체에 전달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프로단체는 즉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축구 종목의 경우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 도핑방지기구에도 통지할 수 있다.

- 13.1.2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통지의 내용
 - 제2.1항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선수 성명, 성별, 국적
 - ② 종목
 - ③ 경기기간 중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 여부
 - ④ 시료채취 날짜
 - ⑤ 시험실로부터 보고받은 분석결과
 - ⑥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제2.1항을 제외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한 규정 및 위반 혐의의 근거를 포함한다.

13.1.3 기밀 유지

위 정보는 프로단체 또는 소속구단 내의 알 필요가 있는 관계자에게만 공개되며, 통지를 받은 프로단체 또는 소속구단은 도평방지위원회가 일반에 공개할 때까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13.2 〈삭제〉

13.3 일반 공개

- 13.3.1 〈삭제〉
- 13.3.2 제7.10항에 의한 청문 없는 결정 또는 제8조에 따른 청문위원회 결정에서 프로도핑 방지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결정문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프로단체에 전달된 이후 사건의 처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내용에는 ① 종목, ② 위반한 프로도핑방지규정, ③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성명, ④ 관련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⑤ 부과된 결과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2조에 의거 항소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최종 항소결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13.3.3 청문 또는 항소 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결정은 결정 내용이 모두 포함된 형태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승인한 수정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 13.3.4 공개는 필요한 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최소한의 조치 또는 기타 방법의 게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를 1개월 이상 또는 출전정지기간 동안 남겨 놓음으로써 완성된다.

- 13.3.5 도평방지위원회, 프로단체, 선수의 소속구단 및 그 직원들은 프로도평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기타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개적인 진술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류 중인 사건의 특정사실(절차 또는 과학의 일반적 설명에 대립되는)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 13.3.6 제13.2항에서 요구하는 일반 공개 의무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고 알려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의 선택적 일반 공개 시에는 사건의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13.4 통계 보고

도핑방지위원회는 매년 프로도핑관리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한다.

13.5 개인정보

- 13.5.1 도핑방지위원회는 프로도핑방지규정 및 국제표준(특히「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을 포함)에 따라 도핑방지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13.5.2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 표준」및 기타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수집, 처리, 공개 및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프로단체 및 소속구단의 의무

- 15.1 프로단체는 모든 선수 및 프로단체가 승인하고 주최, 주관하는 경기나 활동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지도자, 트레이너, 매니저, 팀 관계자, 임원, 의무요원 등),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경기나 활동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 15.2 프로단체 및 소속구단은 도핑방지위원회에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권한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15.3 모든 구단은 정당한 근거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 방지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선수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 15.4 프로단체 및 구단은 도핑방지위원회와 협력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멸시효

16.1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의 혐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프로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통지가 합리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절차도 시작할 수 없다.

제17조 교육

- 17.1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선수 또는 선수 지원요원은 최소 연 2회(온라인, 대면교육) 이상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프로단체는 교육 미 이수자에 적절한 관리 방안을 프로단체의 관련 규정에 의거 마련하여야 한다.
 - 금지목록 상의 약물 및 방법
 -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종류
 - 제재. 건강 및 사회적 결과 등을 포함한 도핑의 결과
 - 도핑관리 절차
 -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권리 및 책임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영양보조제의 위험 관리
 - 스포츠정신에 대한 도핑의 폐해
 - 시즌 중 또는 비시즌 중 경기기간 중·외 검사를 위한 소재지정보 요구사항

제18조 프로도핑방지규정의 개정 및 해석

- 18.1 프로도핑방지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2 프로도핑방지규정 각조의 제명은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실제 내용의

일부분이거나 제명이 규정한 조항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8.3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여러 주해는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18.4 프로도핑방지규정은,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19.1 선수의 역할과 책임

- 19.1.1 프로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방지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9.1.2 시료채취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19.1.3 도핑방지와 관련하여 선수가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9.1.4 의료진에게 선수로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프로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할 책임을 진다.
- 19.1.5 과거 10년 내에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당 프로단체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을 도핑방지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19.1.6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19.2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 19.2.1 선수지원요원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지원하는 선수에게 적용되는 모든 도핑방지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9.2.2 선수의 검사프로그램에 협조하여야 한다.
- 19.2.3 선수가 도핑방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19.2.4 과거 10년 내에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당 프로단체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을 도핑방지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19.2.5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19.2.6 선수지원요원은 정당성 사유 없이 어떠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다.

부칙(2016.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농구, 배구 종목의 경우 2018-2019 정규시즌 종료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 ②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록: 용어의 정의

개인종목(Individual Sport): 단체종목이 아닌 종목을 말한다.

검사(Testing): 검사배분계획의 수립, 시료채취, 시료관리 및 시험실로의 시료운반 등을 포함한 도핑검사절차를 말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국제경기연맹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배분계획의 일환으로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 모두를 관장하는 각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개별적으로 작성된 최고 수준의 선수명단을 말한다.

경기기간 외(Out-of-Competition): 경기기간 중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말한다.

경기기간 중(In-Competition): 리그로 운영되는 프로스포츠의 경우는 해당 프로단체가 주최, 주관, 승인 또는 인정하는 시범경기를 포함하는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의 기간을 말한다. 리그이외의 단일 경기 또는 경기대회의 경우는 프로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의 시작 12시간 전부터 해당 경기 및 해당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골프의 경우, 투어시드전은 경기기간 중에 포함된다.)

일반 공개(Publicly Disclosure): 위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조치 참조.

과실(Fault): 과실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의무 또는 주의부족을 말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예를 들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장애와 같은 특별 고려사항, 선수가 인지했던 위험의 정도 그리고 인지한 위험의 수준과 관련되어 선수가 행한 주의와 조사의 수준 등이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선수가 출전정지기간 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거나 선수의 경력 또는 시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9.5.1항 또는 제9.5.2항에 따른 출전정지기간을 감경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될 수 없다.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No Fault or Negligence):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투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기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인지나의심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2.1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선수가 어떻게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관계자(Person):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기타 주체를 말한다.

국제대회(International Event):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주요 국제대회 주관단체 또는 기타 국제체육단체가 해당 경기대회의 주관단체이거나 해당 경기대회의 기술임원을 임명하는 대회를 말한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규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채택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의 준수는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가 합당하게 이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발간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금지목록(Prohibited List):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목록을 말한다.

금지방법(Prohibited Method): 금지목록에 규정된 방법을 말한다.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 금지목록에 규정된 약물 또는 약물의 종류를 말한다.

단체종목(Team Sport): 경기 중에 선수교체가 허용되는 종목을 말한다.

대사물질(Metabolite): 생물학적 변환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도핑관리(Doping Control): 검사배분계획 수립에서부터 최종항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와 절차를 말하며,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채취 및 관리, 시험실 분석,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 관리 및 청문의 모든 단계와 절차 등을 포함한다.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The 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DAMS):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은 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도핑방지활동을 시행하는 가맹기구와 세계도핑방지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및 통보하는 웹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수단을 말한다.

미성년자(Minor): 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

부정거래(Trafficking):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관계자가 제3자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수송, 발송, 운반, 전달 또는 분배(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직접 또는 컴퓨터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의무요원이 선의로 행한 합법적인 치료목적 행위 또는 인정할 만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사용된 금지약물과 관련 행위는 포함하지 않으며, 금지약물이 합법적인 치료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과 관련된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부정행위(Tampering):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부적절한 영향력의 행사, 부적절한 간섭, 결과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해, 오도 또는 기만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 「시험실 국제표준」및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내인성 물질의 경우 상승된 수치를 포함한다.)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시험실 보고를 말한다.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 적용되는 국제표준에서 설명하는 비정상수첩결과를 확인하는 보고를 말한다.

비정형분석결과(Atypical Finding): 비정상분석결과로 결정하기 전에 「시험실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조사가 요구된다는 세계도평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세계도평방지기구 인가 시험실의 보고를 말한다.

비정형수첩결과(Atypical Passport Finding): 적용되는 국제표준에서 설명하는 비정형수첩결과로 설명된 보고를 말한다.

사용(Use):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 적용, 섭취, 주입 또는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그리고 「시험실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및 대조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을 말한다.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 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치료 또는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요원, 준 의료 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세계도핑방지규약(Code): World Anti-Doping Code를 말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를 말한다.

소지(Possession): 실질적, 물리적 소지 또는 추정적 소지(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의 근거가 된다.)를 말한다.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적 소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계자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기 이전에 해당 관계자가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러한 사실을 도핑방지위원회에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소지를 포기한 경우에는 단지 소지에만 근거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에 반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거래(컴퓨터상 또는 기타 방법 포함)는 거래한 사람의 소지에 해당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말한다.

시도(Attempt): 의도적으로 프로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의 과정상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위반을 범할 시도만으로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시료(Sample or Specimen): 도핑관리의 목적으로 채취된 생물학적 물질을 말한다.

실질적인 도움(Substantial Assistance): 제9.6.1항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자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가진 모든 정보를 서명을 포함한 서면진술서에 완전하게 밝혀야 하며,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청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결정에 완전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공된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제기된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사건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사건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염된 제품(Contaminated Product): 제품의 라벨 또는 합리적인 인터넷 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공개되지 않은 금지약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임시출전정지(Provisional Suspension):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조치 참조

임시청문(Provisional Hearing): 제7.9항의 목적 상 선수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심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8조에 의한 청문에 앞서 개최되는 신속한 약식청문을 말한다.

정규시즌 총 경기수(Total Number of Team Competition in Regular Season): 프로 단체가 주최하는 해당 종목 리그 시스템상 가장 높은 수준의 리그 경기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한국 야구위원회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144경기, (사)한국배구연맹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남자 36경기, 여자 30경기, (사)한국농구연맹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54경기,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주관 매년 정규리그 경기수 35경기를 말한다.(경기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 전체적인 상황 및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의 기준을 고려해 볼 때, 과실이나 부주의가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입증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2.1항의 위반에 대하여 선수는 어떻게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출전정지(Suspensions): 선수로서 출전 가능한 모든 경기(시범 경기, 포스트시즌 경기, 하위 개념의 리그전, 2군 경기 등 모두 포함한다. 다만 골프종목의 경우 다음 연도 대회 출전자격 획득을 위한 투어 시드전은 제외된다.)에 출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4.3항 치료목적사용면책 참조

투여(Administration):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시도를 함에 있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제공, 공급, 감독, 촉진, 또는 기타 관여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이 정의는 합법적인 치료목적 또는 기타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위하여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여한 선의로 행한 의료요원의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지약물이 합법적인 치료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과 관련된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약물(Specified Substance): 제4.2항 참조

표적검사(Target Testing):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를 위하여 특정 선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지자(Marker):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나타내는 합성물, 합성물군 또는 생물학적 요소를 말한다.

프로선수(Professional Athlet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프로도핑방지규정 주요변경내용

1) 용어의 변경

- WADA → 세계도핑방지기구
- KADA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TUE → 치료목적사용면책
- 프로스포츠단체 → 프로단체
- 국제경기대회 → 국제대회
- 엘리트 → 전문체육

2) 적용범위

- 프로단체 정관에 프로도핑방지규정에 대한 수용 및 준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규정 적용 및 시행의 근거 마련(제1.1.1항)
- 선수의 등록, 계약, 입회 등의 과정에서 프로도핑방지규정 수용에 대한 동의 절차 신설 (제1.1.1.1항)
-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의 범위 확대(제1.2항)

3) 금지목록

○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특정 종목 금지약물과 관련하여,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이 금지하는 경우, 프로도핑방지규정에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명시(제4.1항)예: 골프-베타차단제(경기기간 중 금지)

4) 검사 및 조사

-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 명시(제5.1.4항)
- 소재지정보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비시즌 기간 동안" 문구 삭제(제5.3.1항)
- 출전정지기간 중 은퇴 선수 복귀검사 조항에 임의탈퇴 선수 용어 추가 및 관련 절차 변경 (제5.4.2항)

5) 결과관리

○ 종목에서의 은퇴(제7.12항) 조항에 "임의 탈퇴" 용어 추가

6) 공정한 청문에 대한 권리

○ 청문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조항(제8.1.3항) 및 최종심 효력 조항(제8.3.4항) 신설

7) 출전정지기간의 부과

- "경기출전정지기간"에 대한 정의 신설(제9.1항)
- 야구/농구/배구 종목에 대한 출전정지기간의 산정 조항(제9.2.4항) 신설
- 출전정지의 면제 또는 감경 조건에 체내유입경로 입증 문구를 본문에 삽입(제9.4항 및 제9.5.2항)
- 최대 출전정지 제재가 부과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벌금부과 문구 삭제(제9.9항)
- 임시출전정지기간의 이행을 최종 부과되는 출전정지기간에 포함하는 문장 삽입(제9.10항)
- 적시 자인 시점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직면한 후"에서 "위반을 통지 받은 후"로 명확하게 규정(제9.10.2항)

- 출전정지기간 중 선수의 활동이 가능한 예외 항목으로 골프종목에서 "다음 연도 대회 출전자격 획득을 위한 투어 시드전" 참가 및 참가 조건 추가(제9.11.1항)
- 선수의 신분(국제, 프로, 전문체육)에 따른 제재기준의 구체화 및 신설(제9.13항)

8) 출전정지기간 부과 외 결과조치

○ 개인종목에 대한 결과조치(제10.1항)와 단체종목에 대한 결과조치(제10.2항)를 구분하여 출전정지기간 부과 외 단체종목에서의 규정 위반 결과에 대한 규정 개정

9) 구단에 대한 후속조치

○ 규정 미준수 구단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부과 주체를 프로단체로 변경(제11.2항)

10) 항소

-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제9.11.2항 "출전정지기간 중 참가금지위반에 대한 결정" 추가 (제12.1.2항)
- 항소위원회 결정의 최종심 효력 조항 신설(제12.8.3항)
- 항소위원회의 권한 조항 신설(제12.9.1항)

11) 기밀과 보고

-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위반 통지를 소속구단에서 프로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제13.1.1항)
-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일반 공개 시점을 항소 절차 전에 가능하도록 변경(제13.3.2항)

12) 프로스포츠단체 및 소속구단의 의무

○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 조항 신설(제15.2항)

13) 교육

○ 의무교육 방식(온라인, 오프라인)의 명시 및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프로단체의 관리방안 마련 규정(제17.1항)

14) 부록: 용어의 정의

- "경기기간 중" 용어의 정비
- "정규시즌 총 경기수" 용어의 정비
- "출전정지" 용어의 정비
- "프로선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